

의안번호	제 442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9월 일 (제350회)

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 
구성결의안

발 의 자	윤홍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9월 7일

#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9월 7일

발 의 자 : 윤홍창, 김학철, 박병진,  
박봉순, 박한범, 임병운,  
정영수

## 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하여 “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” 를 구성한다.
- 나.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- 다.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- 라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는 100년 미래 먹거리라며 7년 여 동안 공을 들인 항공정비(MRO)산업이 최근 충북도와 투자협약(MOU)을 체결한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항공정비산업이 중대기로에 있음.

- 또한 충청도에서는 항공정비산업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, 뚜렷한 성과가 없고 항공업체의 포기 그동안 조성한 항공산업단지 및 향후 조성계획중인 단지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.
-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 점검을 위한 현황조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### 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

## 관련법규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

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**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1명,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,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